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재봉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674 발의연월일: 2025. 6. 9.

발 의 자: 송재봉·염태영·강득구

이병진 • 이원택 • 이강일

서영교 · 임호선 · 김우영

이수진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·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, 선거여론조사의 실시 사전 신고, 공표·보 도 전 일정사항 등록,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.

최근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대상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표·보도 전 일정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표·보 도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. 또한, 선거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 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수준이 약하여 제재 효과가 적다 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.

이에,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강화, 공표·보도하지 않는 여론조사 관리,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상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. 선거여론조사 관리가 내실 있게 이루 어지도록 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예외대상을 삭제함(안 제108조제3항).
- 나.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신고한 자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(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·보도하는 경우를 제외)에 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,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비공개로 관리함(안 제108조제13항 신설).
- 다. 선거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상향 조정함(안 제256 조제1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"를 "누구든지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제14항 및 제15항으로하고,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3항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신고한 자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(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·보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2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제1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,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, 같은 조 제1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시·권유·유도한 자,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

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·권유·유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·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5.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,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자,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,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자
  - 파. 제108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. 이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·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여론조사 의뢰자를 말한다.

제261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108조제13항 전단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표·보도하지 아니하는 선거여론조사 등록에 관한 적용례) 제 10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신고한 자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8조(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	제108조(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
지 등) ①・② (생 략)	지 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다음</u>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③ <u>누구든지</u>
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	
<u>구든지</u>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	
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	
적, 표본의 크기, 조사지역・일	
시·방법, 전체 설문내용 등 중	
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	
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	
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	
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	
여야 한다.	
1.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	<u>&lt;삭 제&gt;</u>
<u>뢰받은 여론조사 기관·단체</u>	
(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	
는 경우는 제외한다)	
2. 정당[창당준비위원회와 「정	<u>&lt;삭 제&gt;</u>
당법」 제38조(정책연구소의	
설치・운영)에 따른 정책연구	
소를 포함한다]	
3. 「방송법」 제2조(용어의 정	<u>&lt;삭 제&gt;</u>
의)에 따른 방송사업자	

- 4. 전국 또는 시·도를 보급지 <삭 제> 역으로 하는 「신문 등의 진 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 의)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 에 관한 법률 | 제2조(정의) 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
- 5.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 <삭 제> 률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뉴 스통신사업자
- 6.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자가 관리 ·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
- 7.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 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④ ~ ① (생 략) <신 설>

<삭 제>

<삭 제>

④ ~ ② (현행과 같음)

① 제3항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신고한 자 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(선 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·보도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)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 여야 한다. 이 경우 중앙선거여 <u>③</u>・<u>④</u> (생 략)

제 256조(각종제 한규정위반죄) <신 설>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~ 4. (생 략)
- 5.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 론조사를 한 자, 같은 조 제9

론조사심의위원회는 등록된 사 항을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한 다.

<u>④</u>・<u>⑤</u> (현행 제13항 및 제14 항과 같음)

제256조(각종제한규정위반죄) ①
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
조사를 한 자, 같은 조 제9항에
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
를 제출한 자, 같은 조 제11항
제1호를 위반하여 지시ㆍ권유
ㆍ유도한 자, 같은 항 제2호를
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
나 이를 지시ㆍ권유ㆍ유도한
자 또는 같은 조 제12항을 위
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
의 결과를 공표ㆍ보도한 자는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2	 	 	 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 5.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

 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

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, 같은 조 제11항제1호를 위반하여지시·권유·유도한 자,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·권유·유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·보도한 자

- ② (생략)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 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.
-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者

가. ~ 타. (생 략)

 파.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

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

 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

 보도한 자, 같은 조 제2항

 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

공표	또는	= 인	용하여	혀 1	보도	한
<u>자,</u>	같은	조 7	세2항	을 9	위반	하
여	여론3	<u> </u> 소사를	· 한	자,	같	은
조 :	제6항	을 위	반하	ं व	겨론	<u>조</u>
<u>사와</u>	관 관	<u> </u>	는 7	아료 약	일체	를
해당	선거	의 선	<u> </u> 거일	후	6개	월
<u>까</u> 지	보관	하지	아니	한 :	자,	<u>같</u>
<u>은</u> 2	조 제일	)항을	위반	하여	정	당
<u>한</u> /	사유	없이	여론	조사	와	<u>관</u>
련된	자료	.를 저	]출하	·지 (	아니	<u>한</u>
<u>자 5</u>	또는 경	같은 :	조 제	10항	-을	위
<u>반하</u>	여 여	론조	사를	한 2	<u> </u>	
<u>③</u> (현	]행 저	2항고	가 같-	음)		
<u> </u>						

<u>(3)</u>	(연행	제2항과	같음)	
<u>4</u>				
1.				
_				
_				

가. ~ 타. (현행과 같음)

파. 제108조제7항을 위반하여

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

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

한 자. 이 경우 해당 여론

조사를 의뢰한 자가 여론

한 자,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,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

하. ~ 너. (생 략) 2. ~ 4. (생 략) ④·⑤ (생 략)

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 제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   ② ----- 

  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
   ----- 

 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   ----- 

   하다.
   ----
- 1. · 2. (생략)
- 3. 제108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
   <삭 제>

   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. 이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

조사 결과의 공표·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아니 하여 등록하지 못한 때에 는 그 여론조사 의뢰자를 말한다.

하. ~ 너. (현행과 같음)
2. ~ 4. (현행과 같음)
<u>⑤</u> ・ 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
과 같음)
세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

② ------

1.·2. (현행과 같음) <<u>삭</u> 제>

① (현행과 같음)

자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· 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아 니하여 등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여론조사 의뢰자를 말한 다.

4. (생략)

<신 설>

③ ~ ② (생 략)

- 4. (현행과 같음)
- 5. 제108조제13항 전단을 위반
   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
  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
   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
   록하지 아니한 자
- ③ ~ ② (현행과 같음)